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2022.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017. 12. 29., 일부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안 제3조)
-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안 제4조)
-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안 제5조)
-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2. 05. 20. ~ 22. 06. 0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평창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

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 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4조(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및 군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 경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 이력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수행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평창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7개 항목 중 택 1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자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에 관한 규정」 제62조의5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평창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제목 기재)	`00. 00. 00.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00. 00. 00.	○○○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6개 항목 중 택 1
-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최종 결재일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7. 0.>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귀하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의 접수·처리 및 사후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3년 보유 후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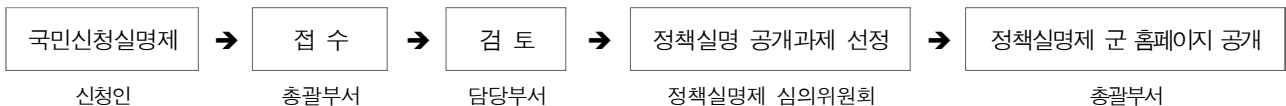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신고의 접수·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처리절차



유의사항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의 판단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에 해당할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관계법령 발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공개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예산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실 기획실장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065